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3. 22.(화) 14: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윤정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최윤정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윤정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3월 15일에 있었던 제1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3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유료방송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 (2016-15-058)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유료방송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붙임 1>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심사 절차 및 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개선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전동의에 대한 현재 절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사전동의 절차를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요는 미래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방통위는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본 심사위원회나 약식 심사위 또는 사무처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통보하게 됩니다. SO·위성 재허가 심사의 경우 미래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 획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약식 심사위를 구성하고 650점 이상이라도 방통위 상임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와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 심사위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SO·위성 변경허가 심사의 경우 경미하고 단순 반복적인 사안인 SO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방통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서면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등과 관련해 방통위 상임위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약식 심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변경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 왔으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본 심사위는 사안별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선(안)입니다. 먼저 SO·위성 변경허가 심사 절차 및 기준입니다. 변경허가 사전동의 요청 시 방통위 사무처는 미래부로 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 본 심사, 약식 심사, 사무처 검토 대상 사업자로 분류하되 합병·분할, 영업의 양도 등으로 방송·통신 시장과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의 경우에는 본 심사위 또는 약식 심사위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송법 제15조에 의한 변경허가 사항은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사업의 양도 등 그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심사를 거치는 건에 대해서는 각 심사의 주요 쟁점과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본 심사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개선(안)입니다. 본 심사위는 9인 이내로 하되 미디어/법률/경영·경제·회계/기술/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심사위원회의 구성절차는 심사위원장의 경우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심사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심사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그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심사계획에 규정되지 않는 심사 관련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심사위원 구성 시, 합병 후 존속법인은 물론 피합병법인의 이해관계자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의결 시점 이후 도래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사전동의 시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보니까 '개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개선보다는 그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요?, 그래서 개선이라는 말보다는 보완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도 개선 대신 보완으로, 또 그다음에 개선 방향도 보완방향이고, 주요개선(안)도 주요 보완(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1년 이상 운영해 보니까 이런 것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보완방향의 첫 번째 동그라미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했는데 저는 모든 심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2가지 측면을, 단어는 2개지만 하나라고 본다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성·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장이라는 말이 너무 센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향후 계획에 오늘 이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나면 앞으로 구체적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나 변경허가 시 이 기본계획을 적용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그대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미래부로부터의 사전동의 요청 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의미인지, 만약에 후자라면 그런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 관련해서 저도 약간 첨언을 하면 지금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새로 의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종전에는 작년 3월에 세워 놓은 기본계획에 의하면 SO·위성 변경허가의 심사는 3인의 약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거나 또는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닙니다. 본 심사위 구성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변경허가의 경우에 약식으로 했고, 재허가만 본 심사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SO·위성 변경허가요, 재허가 말고요. 그래서 SO·위성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3인의 약식 심사위원회나 또는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결정을 쪽 해 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예상컨대 이 변경허가는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경미하고 단순·반복적인 사안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실질적으로도 그랬고, 시설 변경이라든지...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동안은 주로 시설 변경허가라든가 이렇게 단순한 사안이 많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때 최대주주 변경도 있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주로 시설 변경허가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주로 시설 변경허가였는데 이번에 소위 말하는 SKB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변경허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운 것처럼 약식 심사위원회 또는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의결할 사항은 절대로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다양한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 본 심사위원회에서부터 약식 심사위, 사무처 검토를 다 할 수 있도록 이기주 위원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보완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의결 시점 이후 도래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사전동의 시 적용함’ 이것을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그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SKB와 CJ헬로비전의 합병 변경허가에 관한 사전동의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나름대로 지금 정해져 있는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먼저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3페이지에 보면 SO·위성 변경허가 심사 절차 및 기준 마지막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심사를 거쳐서 하는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각 심사의 주요 쟁점과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CJ합병 건과 관련해서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희가 별도의 심사계획을 다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방통위의 심사는 미래부에서 사전동의 요청이 있는 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방통위의 역할은 충분히 준비하고 스터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개선이건 보완이건 미묘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에 전문성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들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동안 제가 변경허가는 아닙니다만 SO·위성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심사위원장을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에 맡아 왔는데 이기주 위원님께서 객관성·공정성 거기에 전문성을 보완하자고 하니까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전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할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전혀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허가 같은 경우 본 심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존 계획에서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약식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지요. 사전동의 제도 자체가 뭐니까? 우리가 미래부에서 사전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약식심사, 그다음에 본심사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작년 3월에 저희가 의결한 계획에 따른 재허가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어쨌든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그런 형태로 약식심사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규정해 두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회에 보고드린 그 효력에 따라 그동안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참고로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 3월에 만든 계획 9페이지에 '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라고, 그 부분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 보고한 안건의 핵심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SKB와 CJ헬로비전 합병 건 심사를 위한 선행조치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음에 합병 건 심사를 위한 본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등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심사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만들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그것도 의결안건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내용에서 달라진 것은 그동안은 재허가 사전동의였고 오늘은 변경허가를 포함한 사전동의 심사 관련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을 보고해 주셨습시다만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본 심사위원장에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가 맡도록 하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시다만 종편 심사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해서 외부 심사위원장을 선임한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기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 따라서 이런 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든 취지는, 아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첫 번째 중요하게 적용될 사안은 CJ 합병 건이 되겠지만 사전동의와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다 할지라도 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때문에 저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장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합병 관련 변경허가 사전동의처럼 방송·통신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변화와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등에 매우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의 경우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라도 상임위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페이지에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방안 중에서 본 심사위원장 구성 절차, 여기에서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과거 종편PP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실제 이때 운영과정을 보면 소수 측 위원들을 배제하고 위원장과 다수 측 위원 중심으로 일방적인 심사와 의결이 진행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과거 속기록을 읽어 보면 소수 측 위원들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있었던 현장에서 심사점수 등 심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다수 측과 소수 측 위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큼니다.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할 경우 종편PP 재승인 심사의 잘못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본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심사위원 추천을 받기 위한 대상 관련 단체는 누가 정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관련단체는 일단 저희가 안을 만들겠지만 당연히 저희 심사계획에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결정하시게 될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거의 여러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학회 같은 경우 제가 어떤 단체라고 단체 이름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학회 같은 경우도 오랜 전통이 있는 학회를 빼고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단체를 포함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단체의 경우도 나중에 충분히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고받았던 초안의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렇고 상임위원이 추천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데 특별히 뻐 이유가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의 심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께서 심사위원 후보를 직접 추천하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객관적으로 만든 심사위원 후보 Pool에서 훌륭한 심사위원님들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외부 심사위원장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기본계획입니다. 유료방송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관련해서 방통위가 사전동의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동의할 때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지는 제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부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이 더 적절하고,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서 심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을 고려해서 상임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기본계획에서 보다 좀 더 융통성이 있도록 그렇게 의결하는 것이 저희들은 더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좌우지간 이 안전에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무처의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저는 존중합니다. 다만, 이 안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외부전문가를 빼자, 이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심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난해 11월에 SKB와 CJ헬로비전 합병 발표를 했지요? 11월 초에 했고 미래부로 그 승인요청 들어온 것이 12월입니다. 인수 발표로부터 5개월, 그다음에 정부에 인수합병을 신청하고 4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공정위와 미래부는 사업자, 학계, 전문가들, 또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을 상당히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시민단체 중심으로 인수합병 관련해서 ‘정부가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기억으로 저희는 두 차례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들의 의견을 교환한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현재 과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저희가 주로 심사항목이나 심사방향, 심사 때 검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님들 모두 다 해서 워크숍 형태로 했던 것 두 번을 빼고..., 몇 차례 정도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때는 스터디를 위한 워크숍이었고, 저희가 지금 진행한 것은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내일도 전문가 의견수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두 차례 워크숍 외에는 전혀 관련된 내용 보고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아직 한 번도 안 하셨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어쨌든 저희가 향후에 준비하게 될 별도의 심사계획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녹아들어서 보고가 당연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는 심사절차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 구성·운영에 대해서만 객관성·공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차에 대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심사에 언제 돌입합니까? 미래부에서 사전동의 요청이 들어오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 사전동의 요청 받은 다음에 공청회를 할 것이니까, 하지 않을 것이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지금 심사절차의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점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바꾸고 심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하는 과정들을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공청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도 당연히 심사계획에 들어갈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계획에 들어갑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우려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시장의 구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방송의 공공성이나 공적책임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35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면 보정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심사기간에 카운트되지 않는, 자료보정할 때 그 보정기간은 카운트 됩니까, 안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자료보정기간은 원칙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카운트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빠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35일이면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의견수렴한다, 공청회한다고 해서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의 전제가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후의 심사절차나 기준 등에 의해서 투명성·객관성·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절차를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폭넓은 의견수렴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부에서 변경허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미 해 온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꼭 심사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내부에서 심사한 자료는 저희가 공유할 수 없지만 소위 공청

회나 토론회 형식을 통해서 외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왔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자료는 저희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미래부와 협의해서 그런 자료는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할 것 같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보도라든지 또는 일부의 단편적인 발표자료는 개인적인 루트로 구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수렴도 당연히 하겠지만 이미 쪽 되어 온 의견수렴도 참고하면 좀 더 폭넓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미래부와 협의를 해서 다양한 의견수렴 내용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의견들을 나누시는 것을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왜 특정한 사안을 자꾸 예를 드는 것인지, 그것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인지, 그 논의를 오늘 하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것은 아닙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금년 한 해 우리가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그다음에 '등'자를 풀어쓴다면 뭐가 들어갑니까?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유료방송사업 허가, 재허가, 변경허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올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에 2017년, 2018년에도 적용되는 기본계획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 ‘(재)허가’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들어갈 것은 변경허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등’ 대신에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등’이라고 하면 변경허가 외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의결주문, 제안이유에 계속 ‘등’자로 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냐, 개최하지 않을 것이냐’ 했더니 ‘그것까지 나중에 세부계획 만들 때 다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자꾸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세부계획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무처도 준비하고 위원님들 간 논의를 하면 되지, 자꾸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기본계획에 관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하십시오. 듣고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고 위원님께 하나 여쭙 보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본 심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가 하고, 예외적이 아닌 경우에 상임위원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끝에 가서는 상임위원이 맡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의견이 어느 쪽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후자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앞에서는 두 개를 다 같이 이야기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른 것을 포괄적으로 했을 때....

○ 이기주 상임위원

- 하여튼 저는 오늘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 사안은 주지하다시피 방송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고, 또 여론의 관심도 아주 증폭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심사 프로세스에서 얼마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심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가 맡을 경우에는 공정성과 공공성이 마치 훼손되고 꼭 내부 우리 위원이 맡아야만 더 공정해진다고, 만약에 이런 논리로 인식이 된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기주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기본계획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것이고,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보강할 필요도 있겠다, 지금까지는 약식으로 심사를 했는데 아주 중대한 사항은 본 심사를 거쳐야겠다는 취지에서 기본계획이 개정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다면 일단 심사위원장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좀 더 폭넓게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또 좀 더 개방화시켜서 오픈해서 열어놓고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너무 폐쇄적으로 내부 위원이 해야 한다고 닫아걸지 말고 빗장을 열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미래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이 들어와서 심사가 시작될 때 과연 심사위원장을 내부에서 할 것이냐, 외부에서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논의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너무 닫아놓고 빗장을 걸어 잠그지 말고 일단 기본계획에는 폭넓게 열어놓고 그때 가서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심사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객관성과 공정성이고, 또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아주 대립된 사안이기에 때문에 이해당사자들도 명백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또 입장이 엇갈리고 대리전 성격의, 또 심사위원회가 그 추천한 사람의 대리투표 밖에 안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명망가가 심사위원장으로 올 수도 있고, 또 학계 여기 쪽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통신 분야 쪽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다가, 관련단체로부터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그 인재 Pool 속에서 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방식이 저는..., 아까 국장님, 그런 취지로 설명하셨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서 고 위원님 주신 말씀과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금년에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내년까지 생각하지 말고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바꾸었는데 내년이라고 못 바꾸겠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SO 재허가, 변경허가 대상이 몇 개입니까? 변경허가는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현재 예정된 재허가 대상….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변경허가는 수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렇게 본 심사위원회를 꾸릴 정도로 큰 것은 많이 안 들어오지요. 우선 재허가 대상 몇 개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세 군데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3개면 SO 숫자로 보면 몇 개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SO 숫자로 세 군데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딱 3개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티브로드 계열 하나, 씨앤엠 계열 하나, 울산방송 하나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3개는 사실상 운영하는 것을 보면 650점 이상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지금까지 봤을 때 이런 데서 650점 미만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파장을 다 고려하더라도 본 심사위원회를 꾸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결하는 유료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기본계획(안)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 들어온 합병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정해지면 바로 그것이 합병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과 기준, 절차와 관련된 다음에 올라 올 안건의 내용을 거의 규정한다, 그 차원에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대리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이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대리전을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해서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의 종편PP 승인 심사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최종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입장, 판단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추천할 경우는 위원들이 대리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소수 측 위원들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아예 심사위원회에 배제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실제로 객관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Pool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이 배제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앞으로 상의해서 정할 부분이니까 당연히 다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기본계획은 일반적인, 전반적인 재허가, 변경허가에 관한 기본계획이라고 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나중에 SKB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건을 사전동의 심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것이 일종의 모범 같은 것이지요? 여기에 바탕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래서 전에 없던 외부 심사위원장과 외부 심사위원 초빙 계획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별 무리 없이 해 왔고 작년 1년 한 것은 의결하지 않고 보고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보고안건은 보고만 하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이것을 의결안건으로 의결해서 하자는 것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구속력을 갖고 좁

허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인수합병 건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심사위원장이나 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겠다, 개정인지, 보완인지, 개선안인지 이것이 그런 취지 아닙니까? 지난 1년간 했던 의결도 아니고 보고안건을 완전히 고쳐서 이렇게 하는 취지가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변경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절차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변경허가 사안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미리 상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약식절차로 처리하도록 했던 것을 사안별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바꿀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기본적인 내용....

○ 김재홍 부위원장

- 일반적인 기본계획에 외부에서 아웃소싱 하는 것처럼 참여시키겠다는 것은 특별히 반대할 근거는 없지만 그것에 바탕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수합병 건의 구체계획을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이와 똑같은 논란이 벌어질 것이고 지금부터 이야기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장과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상임위원들이 직접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문성과 다양성이겠지요. 아까 객관성을 말씀하셨지만 객관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객관성은 저는 별로 믿지 않는 편입니다. 집단이성, 집단지성처럼 그 집단의 객관성이 만들어지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문성과 다양성입니다. 우리 상임위원이야말로 전문성과 그 출신의 다양성 위에서 추천받고 국회 의결이나 대통령 임명을 거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중대한 사안이라고 해서 밖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중대한 사안일수록 전문성과 객관성·다양성이 갖추어진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행정인데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본계획은 이렇게 오픈시키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단체 아까 추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임위원들이 추천하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요? 그래서 관련단체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놓고 상임위원들이 협의해서 하자는 취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상임위원들께서 추천한다고 해서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쨌거나 Pool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주로 외부로부터 받아서, 외부로부터 받은 Pool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끼리 논의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이 편리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유감스럽지만 사무처가 가지고 있는 외부 자문위원, 심사위원들의 족보, 그 Pool 명단을 별로 신뢰할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정부 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문역할을 했던, 제가 어떤 분

들을 폄하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0년, 20년간 정부 주변에서 자문역할, 심사위원 역할을 했던 분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책철학이 투영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전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를 거치지 않은 심사위원 추천을 상임위원들이 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 잠깐 정정할 것이 사무국에서 가지고 있는 Pool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님과 상의해서 해당 관련단체를 정하고 그 관련단체로부터 새로이 추천받은 사람들 전체 Pool 중에서 상임위원님과 상의해서 심사위원회를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그 명단을 써서 그대로 하겠다는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관련단체가 제일 대표된 것이 학회인데 학회에 추천 의뢰하면 역시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합시다. 관련단체 추천도 받고 상임위원들도 전문성과 다양성과 객관성, 또 여기는 심사위원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정무적인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문성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국민여론이, 시민사회가 이것은 곤란하다고 반대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대변할 수 있고,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심사위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상임위원 추천권도 함께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련단체에서 추천받고 그리고 상임위원이 추천한 인사도 놓고 그리고 비교평가 하든가 누가 더 적임자인가 협의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내부에 심사 기본계획을 정하는 것 말고 지금 이 인수합병 건이 3월 말까지 보정기간입니까? 내부에서 언제까지 자료보정하라고 지시한 것이 3월 말까지입니까? 추가 자료보완이...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미래부가 허가기관이지만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득해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사전동의를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구체사항이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요? 법에만 사전동의 법적인 근거만 명시되어 있고...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것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전동의 절차에 대해서 법규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작년에 개선한 것은 35일간 우리가 자료를 보고 사전동의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그때 겨우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부가 자신들의 재허가 심사를 종료한 후에 관련자료를 우리에게 주고 사전동의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괜찮냐는 것입니다. 미래부가 본 심사를 다 한 뒤에 그 자료를 첨부해서 우리에게 ‘사전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면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고, 저는 안 받습니다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도 안 받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재홍 부위원장

- 직업관료들이 받습니다. 직업 공무원들이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업 공무원들은….

○ 이기주 상임위원

- 거기의 직업공무원은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냥 부처간 협조, 협력을 가장 중시하는 분들이 직업공무원들이더라고 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직업공무원 전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다 보니까 사전 협조, 협력, 부처 간 협의를 제일 중시하고 어려운 것이 공무원들 간의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정을 만들어서 동시에 사전심사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부와 사전협의해서 그쪽에서 합의해 주든가 해야겠지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세한 내용이 시행령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번 우리는 미래부 심사 다 끝나고 미래부가 처분 내리기 직전에 사전동의해 주거나 부동의해야 하느냐? 이것은 곤란하고, 이번 인수합병 건에 대해서 언론계나 시중에서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별로 신경 안 쓴다. 그것은 대체로 정부의 경제팀, 미래부나 공정거래위에서 하면 여기는 사전동의에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서, 부위원장으로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인가?’ 할 때가 많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하고 시행세칙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의 법적 권한이라고 할까, 이것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그런 불비한 법제 위에서 우리가 사전동의 심사를 해야 합

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간에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기간 중에 이 변경허가를 어떻게 했느냐? 중편 재승인 심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제3기 방통위 위원들의 책임이고 방통위원 개인들의 실적이라고 할까,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인데 우리가 책임지고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안합니다. 외부에 오픈시켜 놓는 것, 굳이 꼭 반대할 근거는 약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일수록 예를 들면 인수합병 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탕 위에서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뒤로 또 논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대한 것일수록 1단계 심사할 때부터 상임위원 반대, 찬성이든지 여야든지 두 분 이상 들어가서 외부 심사위원들과 함께 하고 1차 심사 의견서를 그 상임위원들이 들고 와서 전체회의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2단계 의결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어렵다면 전체 상임위원이 처음부터 외부 심사위원들과 함께 심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영방송 EBS 사장 면접위원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비공개로 간담회를 할 때 그러면 차라리 전체가 다른 외부 위원들과 함께 심사를 하고 그 심사 의견을 가지고 의결로 가자, 이렇게 잠정 합의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렇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의견을 모은 적도 없고, 그것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제안만 되었을 뿐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우리 전체 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방안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저와 고삼석 위원이 '그렇게 합시다' 찬성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 위원은 거기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아니고....

○ 최성준 위원장

- 정확하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했을 뿐이지 위원들 간 합의가 됐다고 말씀하셔서...

○ 김재홍 부위원장

- 잠정합의라고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정합의도 된 적이 없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게 안 하면 지금 기본계획에도 외부 심사위원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분명히 반대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책임 있는 행정을 펼 수도 없고, 지금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다른 말씀 전에 지금까지 제3기가 구성된 이후에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했으니까 그것은 빼더라도 재허가에 관한 사전동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부위원장님께서도 마치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미래부가 어느 정도 심사해서 의견을 첨부해서 왔으니까 저희는 협조 차원에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또 살펴보더라도 미래부 의견에 따라서 지금까지 쪽 해 온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과 너무나 어긋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위원회가 사전동의에 대해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지, 그 의견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또는 제대로 살펴보더라도 의견이 다를 경우에 미래부 의견을 따라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각자 평가하기 나름인데 저는 더군다나 방통위 내부에서 방통위가 정부 경제팀의 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경제팀이 어떻게 방향을 먼저 정하면 자기들 본 심사를 완료하고 자료를 주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나 미래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세 기관을 모두 다 펴

하하시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경제팀의 일원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사전동의가 미래부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다시 추후에 협의해서 정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진도가 너무 많이 앞서 가는 것 같아서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마치 심사위원회 구성까지도 아우트라인을 다 확정하자고 들리는데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케줄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Pool을 만드는 데서 상임위원이 골라내는 작업을 하자고 사무처에서 보고했는데, 그것은 상임위원들에게 일손을, 수고를 덜어주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은 마치 '사무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들의 Pool 명단을 신뢰할 수 없다. 마치 관련단체, 관 주변을 기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명단을 가지고 있다' 마치 이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무처의 사기를 더 꺾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직업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사무처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리전이 될 성격이 농후해진다,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원들이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임위원 추천한 분의 입장을 대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차이가 자꾸 대결구도로 가면 심사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렇게 계속 대결해 나간다면 나중에 결론이 났을 때 결론 내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원만하게 승복이 되겠느냐?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을 사무처에서 사전 준비단계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수합병에 대해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낸 학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업을 다 해서 명확하게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제시하거나 기고를 하거나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거나 성명서를 내거나 그런 분들은 일단 다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작업을 사무처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장 객관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들로 해서 Pool을 만들어 주면 상임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골랐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골라내는 작업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가장 객관성을 또 공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사무처의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처 전체에 대해서, 직업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펴

하,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자문위원 후보 명단, 학자들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는데, 그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부언할 필요도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계기는 한마디로 지난번에 방송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워크숍을 하면서 사전에 한마디도, 상임위원들에게 부위원장인 저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부위원장이 명색이 해외 출장 중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을 집행한 사무처 담당 국·과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해명인지, 변명인지 하고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날짜를 유동적으로 만들어 놓고도 다 일정들이 바쁘시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사전에 설명하고 상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것은 해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정말 사무처 직업관료들의 이런 자세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직업 관료들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독립성까지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지켜서 일해 주시기를 고언 삼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가지만 예를 들지만 그 전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직분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하고 그래야 비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방향을 돌려서 원래 이 안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순수하게 이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주 오해를 할 것 같은 말씀을 두 가지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 있습니다. ‘경제팀의 일환이다. 우리 방통위가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런 말과 ‘우리 방통위가 어떤 정책결정,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타 부처와 다 협의해서 그대로 한다’ 이 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직업공무원, 사무처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저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직업공무원의 개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풀타임 공무원인 경우가 직업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고, 상당히 오랜 동안 계속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는 사람을 직업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자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사무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전자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 저도 중간에 공무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거북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라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이 안건으로 돌아와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보면 약간의 문구 조정 정도 이외에는 차이가 없는데 지금 기본계획상 재허가, 변경허가의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사위원장으로 외부전문가를 선택지로 하나 놓을 것인지, 즉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할 것인지, 또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임위원 추천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

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지금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부위원장님과 고 위원께서는 심사위원장은 반드시 상임위원이어야 한다, 그다음에 본 심사위원회에 대한 상임위원의 추천권도 명문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석진 위원과 이 위원께서는 ‘모든 것은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할 수도 있고 외부전문가가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다음에 추천은 상임위원이 물론 추천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상임위원에게 추천권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표현은 굳이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과 고 위원님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보면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대로 의견이 다른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의견들의 전제가 되는 이유가, 저는 오늘 회의가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시다만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어느 상임위원께서 누구를 추천해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하나 어떤 Pool을 가지고 협의해서 결정 하나 저는 결과가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또 결격사유로 정해 놓은 것을 스크린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이 추천하나 안 하나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다른 의견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다, 내부 상임위원 중에 한다, 그 어떤 것도 심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크게 결정력을 갖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 상임위원이 해야 한다, 외부전문가가 해야 한다,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 차이가 결국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관련단체가 추천하건 상임위원이 추천하건 전문가의 다양성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하자고 여기에서 연장선상에서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공개 간담회에서 티타임은 아니지만 이야기해서 저는 그렇게 정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저는 여기에서 외부전문가를 재허가, 변경허가 심사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2014년 1월입니까?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여러 가지 말들과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다 맡기면서 그 과정을 비밀이다, 자료를 요구하는 야권 추천 상임위원들에게 자료를 안 주니까 그 상임위원이 사무처 간부를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신문기사 나온 것을 제가 읽어보고 '이상한 기구네. 상임위원이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하나의 동일체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구나. 역시 여기는 여야, 정파적으로 나뉘어서 할 수밖에 없는가보다' 저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 논란이 많은 사안일수록 상임위원이 처음부터 관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건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 왔고 중대한 문제일수록 상임위원이 처음부터 다 참여하든지 1명씩 대표처럼 해서 하든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부위원장님과 고 위원님께 한 번 여쭙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안에서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장을 해서는 안 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폐해가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에 대한 책임이 방통위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요.

○ 고삼석 상임위원

- 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이런 사안들의 경우는 의견 일치가 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까지 외부 심사위원장에게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심결할 때 통신사업자를 제재할 때 의견 진술도 듣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야 사업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FCC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통상 청문회라고 합니다. 위원들 전체가 사업자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보

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과정에 위원들께서 참여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자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왜 불가능합니까? 필요하다면 저희 심사계획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것이 내부 상임위원이 됐든 외부전문가가 됐든지 간에 저희가 심사하는 것,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해당 사업자를 불러서 청문해야겠다면 저희가 청문을 당연히 하면 되지요. 그것을 왜 못 합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안 넣어놓았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해당 계획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 고삼석 상임위원

- '청문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기본 틀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원하시면 SKB와 CJ헬로비전 계획을 다시 세울 때 거기에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무엇을 못 하니까 이것은 외부전문가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의견은 이해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쭙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우를 다 통괄하는 SO에 관련된 허가, 재허가, 그다음에 변경허가 모든 경우에 다 통용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SKB와 CJ헬로비전의 심사계획은 아직 입안도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타당성 여부를 다 반영해서 저희가 논의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라고 해서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누누이 다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심사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내부 상임위원 중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이지, 상임위원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양자택일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원칙 예외'나 '또는'이나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있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선택지를 두는 것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것이 SKB와 CJ헬로비전 합병 건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기본계획이 아닙니다. 허가, 재허가, 또 변경허가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계획을 보장해서 원칙을 다시 다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안이 아니니 미래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이 오면 그때 논의할 일입니다. 자꾸 진도가 앞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도 믿어주시고 또 위원들 간에도 서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몫을 빼앗긴다'. '안배 차원이다', '각각 상임위원들은 자기 몫이 있는 것이다'. '추천 위원도 내 몫을 챙겨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런 몫을 나누어 먹는 이런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마치 비춰지는 것 같아서 제가 꽤 유감입니다. 오늘 기본계획을 빨리 확정해 놓고 사전동의가 오면 그때 가서 논의할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과열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제3기 출범하면서 각종 법정위원회 위원장, 위원들 선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 기억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우리 내부 위원이 해도 제가 앞에 예시를 둔 두 위원회는 외부위원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크게 상임위원이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외부위원이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감해서 그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와 같은 것인데 만약에 심사위원장이 외부냐, 내부냐에 따라서 그렇게 극단적인 장·단점이 있다면 본 심사위원도 상임위원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순환논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첨예한 장·단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본 심사위원장에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타의 방안 중에서' 국어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또는 기타의 방안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이렇게 하면 어떻

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기타의 방안'을 더 넣자는 말씀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하도 이것이 대립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것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밑에 심사위원은 또 외부전문가 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크게 이견은 없는데 왜 심사위원장은 크게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지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전에 먼저 허가, 재허가의 사전동의의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각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해서 총점을 계산하지요? 그리고 그 총점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채점을 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것도 정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배점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사위원들끼리 논의를 거쳐 심사의견을 방통위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해 왔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심사결과에 대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기속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기속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존중은 해야겠지만 기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재허가의 경우에 점수를 예를 들어서 650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630점을 했든지 670점이 나왔는데 저희가 위원회에서 그 점수를 다시 채점을 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지만 이와 같은 심사결과를 각자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되면 일치되는 대로 또 서로 약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대로 제출했을 때 거기에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다섯 분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재허가 경우와 그다음에 변경허가의 경우와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또 변경허가 중에는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온 것처럼 방송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있는가 하면 작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재허가 중에서도 거의 쪽 진행되어 오는 절차에 따라서 몇 년마다 반복적으로 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매우 상황이 심각해서 꼼꼼히 봐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런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우리 내부의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아니면 외부전문가를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한지를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 안을 만든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의 기본취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타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기타의 방안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함’이란 말씀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양자택일을 거쳐지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그것을 상정하지 않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제안을 하면 원칙적으로 상임위원을 한다는 것을 전제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상임위원이 맡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고 예외적인 경우 외부전문가 중에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표현은 정리하시되 그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려면 본 심사위원도 상임위원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책임행정 이야기를 한다면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왜 달리 생각해야 하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지난번에 제가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저희 위원 다섯 사람이 심사위원회에 다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던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하자는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 중에는 ‘외부전문가가 위원장이 되면 외부전문가인 위원장이 일부 위원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위원들에게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이 생긴다, 그 사이에 사무처가 끼건 안 끼건 간에.’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여기 계신 다섯 분 중에 저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겠지만 네 분 중에 한 분이 심사위원장이 되시면 그분과 그다음에 다른 네 사람이 정보의 비대칭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들어가서 5일간, 3박 4일이건 가서 심사를 해서 많은 정보를 혼자 다 가지고 오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그런 정보의 비대칭은 또 어떻게 합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나누시면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 전제를 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권한들은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또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무국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다수 측 위원님들과 소수 측 위원님들간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마치 일부만 심사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일부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편성PP 심사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는 것은 아무래도 위원장님이나 다수 측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참 부끄럽고 이런 안까지 제안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하도 서로 신뢰가 없고 의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건 외부전문가가 위원장을 하건 심사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3박 4일을 한다면 3일 동안 해당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장소이건 아니면 저희 위원회건 와서 그 심사위원회가 그대로 와서, 또는 저희가 그쪽으로 가든지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전부다 같이 브리핑을 받는 방안도 가능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위원장님 말씀은 심사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렇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심사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그 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은….

○ 최성준 위원장

- 그 시간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심사위원회에서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또 경우에 따라서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서로 논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리된 부분을 지금 자꾸 정보의 비대칭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심사위원회 딱 마치는 그 순간 들어와서 그분들로부터 생생하게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다 들으면 정보의 비대칭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생생하게 다 들을 수 있으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논쟁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비공개 간담회에서 나왔던 상임위원 전체에 외부 인사를 보태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것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고 저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했고, 다른 세 분 위원이 누구도 명시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명시적으로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인 잠정 합의라고 봤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아니요.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위원장은 3박 4일 동안 다른 위원들은 못 나와도 예외적으로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까지 부연하시면서 제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제안했고 우리가 묵시적인 합의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제쳐 놓는 이유는 ‘아, 이것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외부 심사위원회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수합병 본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부터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외부 심사위원장을 할 이유가 없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들어가면 제가 심사위원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물론이지요. 지난번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심사위원장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와서 또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그것은 완전 절차의 중복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난번 EBS 사장을 선임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면접이지요. 면접과는 다르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도 심사를 그렇게 하고, 다른 외부 심사위원들과 함께 전문성...

○ 최성준 위원장

- 자꾸 또 이야기가 그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SKB와 CJ헬로비전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시 논의할 부분이고 오늘은 그 전 단계인 기본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방안을 여기에 다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는 이 문구로 다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구대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SKB와 CJ헬로비전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본격적으로 논의하면 어떻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또 논란을 벌이자는 말씀이신데 아까 불신 때문이라고 김석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법규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우를 미루어 그것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수합병 심사위원회를 외부에 주기 위한 전 단계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은 외부 심사위원장에게 하지 않고 상임위원 전체가 참여하고 외부 심사위원을 보태서 하자는 정도의 약속, 언질을 하지 않는 한 이것은 그것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무엇을 약속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분명히 묵시적인 찬성은 있었지만 묵시적인 반대는 없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자리는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도 아니고 서로....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분명히 위원장님은 왔다 갔다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는데...

○ 이기주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자꾸 인용하는 그 간담회는 뭘니까? 자꾸 이해가 안 가는데 두 분이 언제부터인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한 티타임은 참석을 안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사전 논의가 아닌 차 한 잔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 나누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이렇게 몇 차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 위원님이 “내가 여태까지 재허가 심사위원장을 했는데 왜 외부에서 바뀐다는 소리가 있느냐?” 오늘 말씀하신 것도 다섯 분 간 한 번도 논의 안 된 이야기 중에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러셨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먼저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 위원님이 공개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서서...

○ 고삼석 상임위원

- 공개하지 말자고 이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왜 그 부분을 공개하십니까? 분명히 제가 먼저 이야기를 안 꺼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야기됐던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오늘 논의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자꾸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이렇게까지 과열되지 않아도 될 사전 기본계획을 일단 확정시켜 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심사계획을 세우자고 되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사전단계에 불과한데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지난번에 위원장님 방에서 아주 극히 사적으로 무슨 공식 간담회도 아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가볍게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논란이 있고 서로 믿지 못하면 다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는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공식적인 논의체계를 갖추었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5명 전원이 들어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가볍게 나왔고, 또 서로 간에 불신을 허물기 위한 그런 제스처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웃고 그냥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

하신다면 그것은 토론을 다시 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건데 그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했던 것은 이것이 어떤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여쭙 봤던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 최성준 위원장

-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위원장님께서 부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 기본계획 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논의해서 상임위원 다섯 분이 모여서 그래도 가장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방향으로 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기본계획에서조차 ‘그런 것을 미리 약속을 해라’ 그다음에 ‘문구를 외부전문가라는 것은 빼야 한다’, 아니면 ‘원칙은 이렇다는 것을 써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우리 국민들,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과 공정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장을 이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확하게 자구가….

○ 이기주 상임위원

- 기타의 방안 중에서….

○ 최성준 위원장

- 기타의 방안 중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켜 놓으면 되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향후에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켜진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개된 회의라서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어떠한 전제를 깔지 않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어차피 다음에 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다시 한 번 논의가 되기 때문에….

○ 최성준 위원장

- 당연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부분에서는 특정 방안에 대해서 다수 위원님들이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속에서 하겠다면 사실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만 확신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아까 누차 이야기한 것처럼 당연히 오픈해 놓고, 제가 아까 차 마시면서 다섯 사람 다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 거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가서 똑같은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절차상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니까 저 나름대로도 이런 방안도 있고 저런 방안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는 하나의 방안을 만들어서 해 보자고 시도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꼭 그 방안이 결정적으로 맞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약간의 믿음이 조금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고 가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저희가 그동안 주로 해 왔던 티타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런 선행절차로서 티타임이 없어도 무난하게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대로 의결을 하고 앞으로 SKB와 CJ헬로비전 건이 됐든 어떤 사안이 됐든 구체적인 사안이 생겼을 때는 제대로 위원님들 간의 티타임이 됐든 차 한 잔이 됐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정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릴 것이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하시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독임제 부처라면 외부전문가 다양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꾸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전문성과 다양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

에 위원회답게 위원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의결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특히 꼭 상임위원들이 참여해서 할 그런 중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 아까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덜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너무 편하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안일수록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사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만 외부 심사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려는 것은 기본적인 철학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무리 없이 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수합병 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에 바탕해서 그 인수합병 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판인데 저는 외부로 가져가기 위한 전 단계다 하는 오해인지, 이해인지, 제 해석인지 느낌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 아까 사적인 간담회다, 저희가 티타임을 거부한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논의해 봤자 소수자들 우리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없다. 소화된 적이 없다. 결국은 다 다수의 의사대로 끌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굳이 토론, 논쟁하고 시간 보낼 필요가 없고 전체 공식 회의에서만 비판을 하든지 견제를 하든지 지적을 하든지 공식 발언을 통해서만 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두 번인가 “상임위원들 모여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했고, 티타임도 어차피 법정위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상당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은 외부로 가져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을 수 없어서, 이 연장선상에 있는 추후 구체적인 그 심사계획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장으로 넣는 것은 반대입니다. 심사위원 중에 외부전문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부전문가 추천권을 관련 단체뿐만 아니고 상임위원들도 추천할 수 있게 해 놓고 상임위원과 협의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은 계속 반대의사인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의결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난번 2015년 3월처럼 보고사항으로 한 것과 의결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작년에 보고사항으로 했을 때도….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서 접수는 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접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의결을 받고 가는 것이 보다 더 절차상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의결안건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지난 사례를 봤을 때는 반드시 의결안건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이나 보고안건이나 접수받거나 의결하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갑갑해서 여쭙 봤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계속 반대의견이신 것 같고, 고 위원님께서도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말씀드렸다시피 심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폭넓게 위원장님께서 어떤 전제를 깔지 않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추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원래 초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관련 단체를 선정할 때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의원께서 개인을 지정해서 추천하는 것이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모양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단체를 지정하시면 그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가 최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분을 본 심사위원장과 본 심사위원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그 위에 '본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함' 이렇게 해 놓고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구분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함'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방송통신위원장이….

○ 이기주 상임위원

-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함.

○ 김석진 상임위원

- 위원과 위원장을 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장과 위원을 모두 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사안이 생겼을 때….

○ 최성준 위원장

- 기본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충분히 제대로 협의를 해서, 오늘 논의를 할수록 저희가 사전협의를 덜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 최성준 위원장

-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읽어보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함.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구분 없이….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위에 구분을 다 없애고 동그라미에 본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함 해 놓고 그냥 작대기 해서 쪽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어떻습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이기주 위원님의 제안에는 상임위원들이 위원장도 될 수가 있고 또 위원도 될 수가 있고, 또 외부위원도 될 수가 있고, 그것은 전부 상임위원과 협의해서 위원장님이 결정하시게….

○ 이기주 상임위원

- 어떤 조합도 가능하게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어떻습니까?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지금보다 유연하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협의해서 정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기본계획으로서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자꾸 너무 나갔다고 말씀하시지만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외부로 주기 위한 전제조치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하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 최성준 위원장

-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간담회가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같이 제 방에 모여서 그냥 차 마셨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전원들이 다 모여서...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간담회를 참석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간담회가 아니고 티타임이 아니고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냥 차 마신 자리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티타임 규정이 있는 것인지, 우리 다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의견접근을 봤으면 그것은 존중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약속하지 않더라도 언질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기본계획이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다섯 분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부위원장님이 들으신 말

씀과 제가 들은 말씀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모임의 성격이 기존의 티타임과 다른 것이지 말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어쨌든 저는 이 안전에 대한 사전협의를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가 그런 새로운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우의 수도 나올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더 강력하게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이기주 위원님 수정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무엇을 말씀드립니다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 최성준 위원장

- 외부전문가가 여기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한다고 해서 두 분이 항의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쪽 극단, ‘그것이 정 불만이면 저희들이 다 들어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 극단, 양쪽 극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방안을 새로운 안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고 제안했으면 사무처에 지시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게 하지요. 좋다” 그랬더니 “그러면 위원장인 나는 외부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 김재홍 부위원장

- 굉장히 심도 있는….

○ 최성준 위원장

- 그날 아침 방송정책국과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방송정책국장이 “위원장이라도 함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하도 외부전문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방법은 다양하게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고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다양한 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었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자리에 사무처만 들어오지 않았고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했기 때문에 제도적인 티타임 못 지 않은 상임위원 전원의 간담회라고만 생각했고,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상임위원들 모여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잡담해야 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전번에 모여서 한 번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티타임에 안 들어올 테니까 이런 자리 자주 갖자고 말씀하신 것이 누구입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상임위원들끼리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좌우간 그래서 나중에 달라진 것은 상임위원들끼리는 거기에서 상당한 의견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더 이상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고 최종적으로 그 의견만 다시 한 번 여쭙 보겠습니다. 누가 받아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구가 정확한지 들어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에 본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구성함.’ 그리고 그 <표>는 다 없애고, 작대기 하나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함’

○ 김석진 상임위원

-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부르신 것 가지고 그 앞에 작대기 하면서 그 중간에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은’ 그렇

게 하나 넣어서, 주어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자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나중에 그 구체적인 사안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들 중에서 혹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할 때 그것을 참관, 참여 내지는...,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방안을 그때 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심사위원장이자, 심사위원회에 상임위원이 참여한다, 안 한다 이것 말고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써봐야 알겠지만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추천은 이렇게 이렇게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은?

○ 최성준 위원장

- 상임위원 또는....

○ 김재홍 부위원장

- 관련단체가....

○ 최성준 위원장

- 상임위원도 되고....

○ 김석진 상임위원

- 외부 관련단체, 상임위원도 추천할 수 있게끔 넣었지 않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문구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정말 오해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외부전문가를 끼워 넣기 위한 뭔가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자꾸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오해인지 불신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끼리 이야기한 것도 차후에 다 무효화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믿고 더 논의를 진전시키겠습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믿어야지요. 그래서 외부전문가가 무슨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미션을 띠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 은밀하게 뭔가 내통하면서 무엇을 한다? 이런 불신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오해를 푸시고요. 지난번에 차 한 잔 마실 때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까지 다 나와서 상당 부분 불신이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고 위원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대폭 신뢰를 해 주셔서 원만하게 오늘 매듭을 지으시지요. 기본계획 확정을 이렇게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세부계획은 그 사안이 떨어질 때, 사전 임명동의가 요청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상임위원들끼리 협의 하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다수과인지, 다수결인지 책임있게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티타임은 당분간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 한 저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체회의에 와서 발언만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들끼리 중요한 것 이야기하자면 저도 그것은 티타임 못지않은 거기에 준하는 이상의 상임위원단 간담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의견이 이루어졌으면 그 위에서 진전시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과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티타임에 참여해 주셔야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 서로 각자의 의견을 알고 방안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티타임에서….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SKB와 CJ헬로비전 심사계획을 세울 때는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해서 서로 각자의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서 합일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티타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히 밝힌 것처럼 다수결로만 끌고 가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은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회의에 와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저희의 의사가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소화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하여 반대해도 또 반복적으로 반대해도 그것이 반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 최성준 위원장

- 어떻게 그것이 반영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거기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여기 와서 우리가 충분히 할 이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책임 있는 다수파가 다수결로 의결하고 집행해 나가라,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까지 간담회건 티타임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논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을 이루어냈는데 그것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수정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수정제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김재홍 부위원장

- 그 문구 정리한 것을 보고 다음번에 의결하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시 한 번 문구를 부르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결정함’

○ 김재홍 부위원장

- 거기에는 상임위원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 최성준 위원장

- 심사위원장도 되고 심사위원도 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추천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단체를 정함에 있어서 제가 상임위원님들 의견을 들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위원장께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를 앞으로 뺀 이유가 관련단체가 됐든 외부전문가가 됐든 상임위원이든 그것을 다 협의해서 정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임위원은 위원장도 될 수 있고 심사위원도 될 수 있고 외부전문가가 심사위원장도 될 수 있고 심사위원도 될 수 있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둔 안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모든 것을 다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아까 나왔던 소소한 문구지만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 제목을 그렇게 바꾸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개선이라면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완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 강화가 앞에 나오네요. 강화가 두 번 들어가니까 ‘변경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 왔으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보완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변경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된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3월 31일 목요일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6년 제1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35분 폐회 】